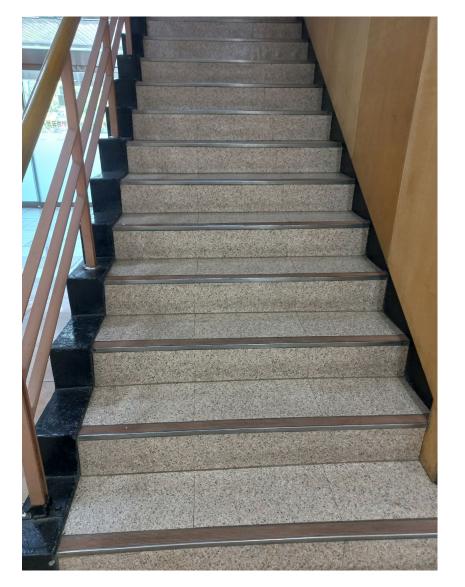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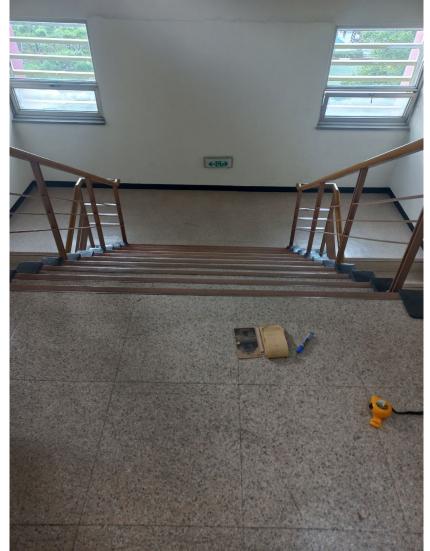


제25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국민의힘 최봉희 의원 기선거구(영등포본동, 신길3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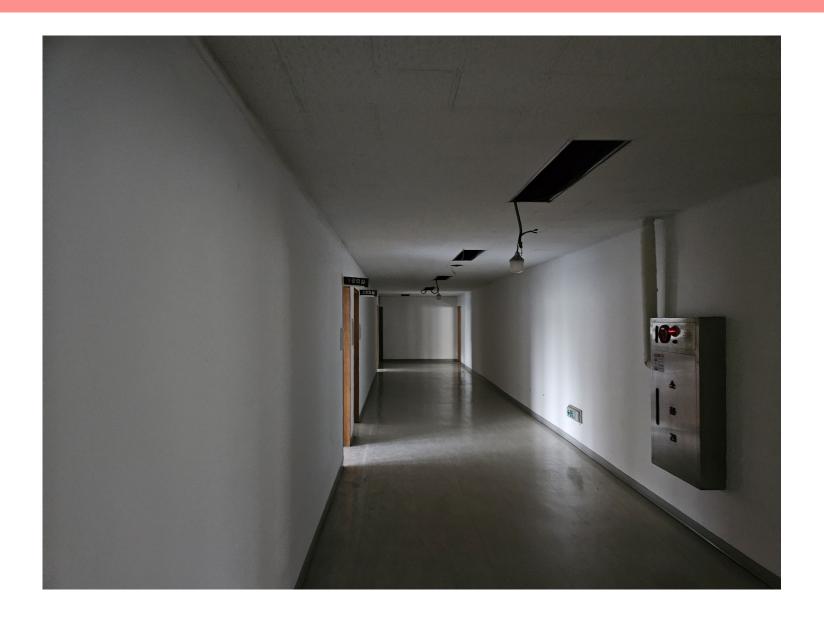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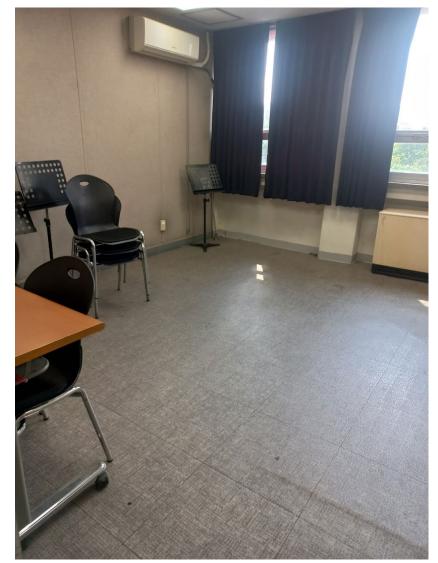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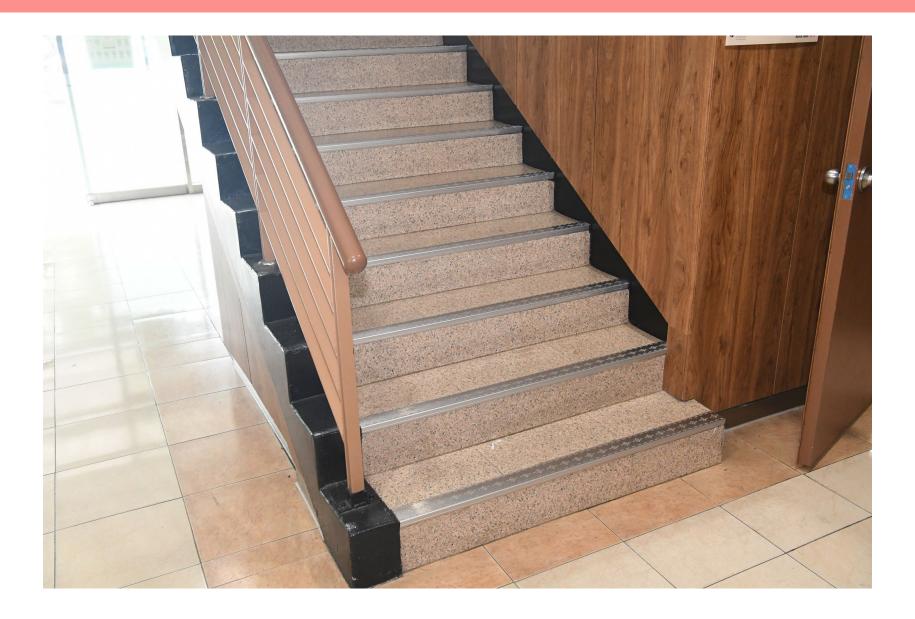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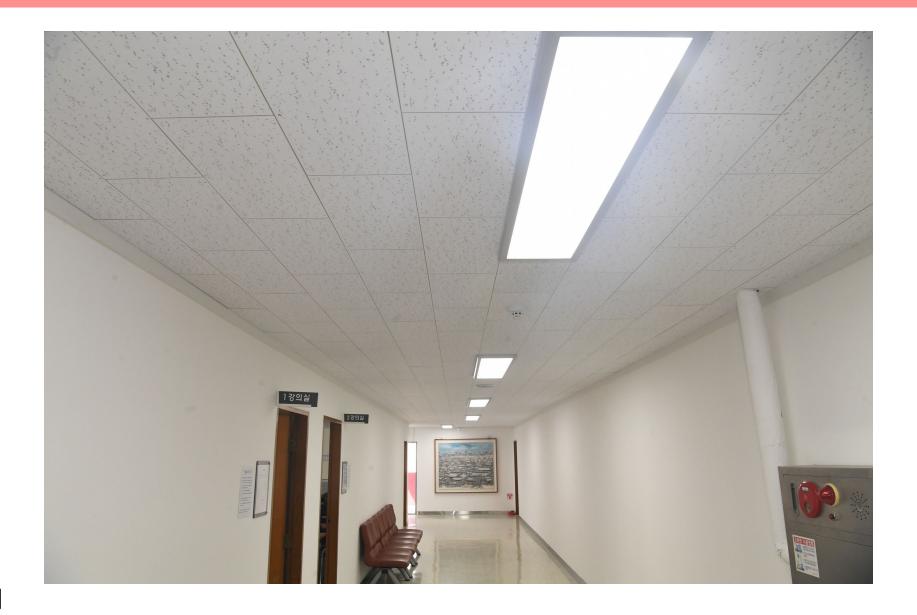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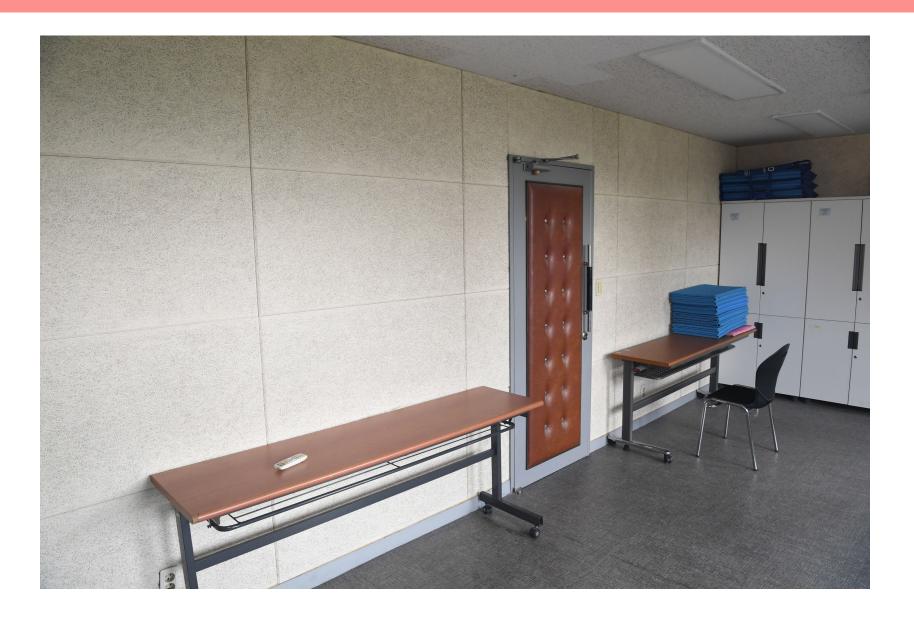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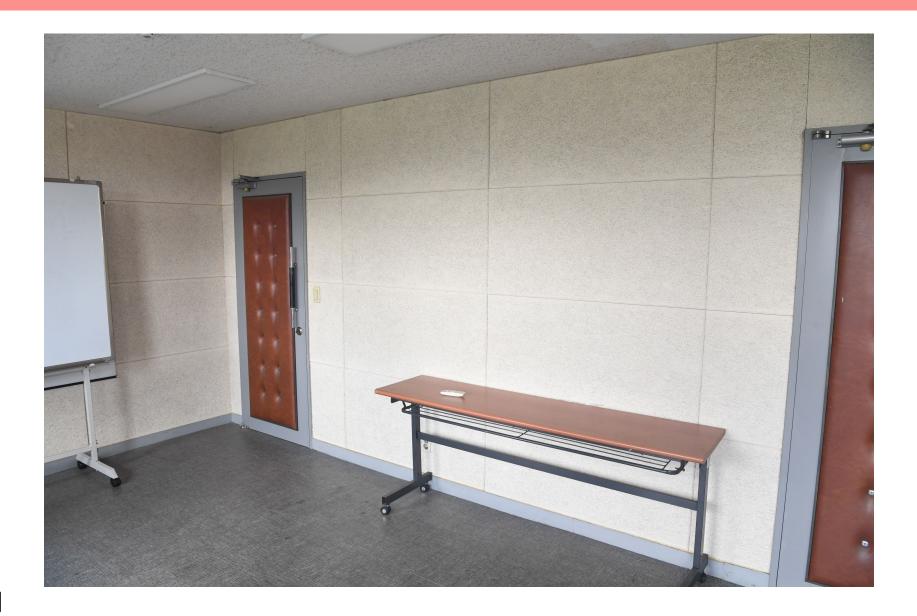














지방계약법 시행령 위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 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 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 야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위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사항 및 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24조를 준용한다.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 2. 입찰공고[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의 내용
- 3. 개찰의 결과
-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 5.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 6.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 7. 대가의 지급현황

